

## I.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3. 06.

## 국 토 교 통 부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6.29.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용역집행계획 및 평가서류 제출에 관한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자’ 평가결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붙임의 현황)를 별지로 작성하여 문서로서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 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용역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18.1.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점수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1 -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는 용역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9.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배분 기준

가. 참여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6.29. 시행)에 따라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산정 예시를 참고하여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평가자 수는 반올림하여 정한다.

다. 참여평가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 총괄평가자는 주관사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평가자 산정예시 : 배치대상 기술자가 5명인 경우>

지분율(%)		참여평가자(인)		비 고 (±10% 적용 시)
A사 (이상)	B사 (미만)	A사	B사	
80	20	4명 (5×0.8=4.0)	1명 (5-4=1)	A사 4명, B사 1명
70	30	4명 (4×0.7=3.5)	1명 (5-4=1)	A사 4명, B사 1명
60	40	3명 (5×0.6=3.0)	2명 (5-3=2)	A사 3명, B사 2명
50	50	3명 (5×0.5=2.5)	2명 (5-3=2)	A사 3명, B사 2명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업체능력 평가(총괄평가자 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11-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2.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제2종 분담업체 포함)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 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므로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별권으로 2부를 제출한다.

\*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 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전자파일(PDF 또는 배포용문서로 저장된 HWP파일)을 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1. 환경영향 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가. 평가 대상 참여평가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1) 참여평가자 구성

(가) 참여평가는 총괄 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환경), 분야별 참여평가자 2인(환경) 총 5인(제2종 분담업체 포함 시 6인)으로 구성한다.

구 분	분 야	인 원	비 고
총괄 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①)	1인	
	환경분야(②)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③)	1인	
	환경분야(④)	1인	
분담(제2종)	환경분야	(1인)	비평가 대상

(나)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 문 분 야
총괄 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각 1인(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의 전문분야를 중복할 수 없다)
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각 1인(분야별 책임평가자 2인의 전문분야를 중복할 수 없다)
분담(제2종) (1인)	자연환경

\*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이 가능하다.

(2) 공고일 현재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의 최근 환경영향평가업체 간 이적 기간에 따라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가)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나)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다)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나.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分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단순사업” 기준에 따른다

### 다. 자격 및 등급

(1) 시행령 별표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용역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 '21.3.25.)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 라.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 외에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2)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 기간 및 해당 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00%

(나) 기타 환경분야 경력 : 60%

\* “환경분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환경으로 전문분야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으로 (해양 제외) 정의한다.

\*\* 총괄평가자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직무분야가 환경인 경력을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 :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인정

(3)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기술용역에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여, 개인경력 확인서에 감독 등의 관련업무 및 수행기간,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발주청이 증명한 경력에 한한다.

(5) 일정기간 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적용례>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 2020.1.1. ~ 2021.6.30.(80일) → 80일 적용

(6) 참여평가자의 경력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전체분야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준공된 차수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7)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 마.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에 대한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 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이라 한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5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

### (2)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 계수(a)

(가)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나) 해당평가 외 : 0.6

### (3)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 계수(b)

(가)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나) 기타사업\*\* : 0.6

\* “철도분야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 “철도분야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4) 실적 산정 방법 : 실적건수(건) =  $\Sigma(a \times b)$

\* 환경영향평가등 실적평가가 적용례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 건수를 인정

실적평가 종류 발주사업 종류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 영 향 조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1.0건	0.6건	0.6건
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0.6건	0.6건
소규모평가	0.6건	1.0건	1.0건	0.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0.6건	1.0건	0.6건	1.0건

보유 실적	(2) 항 적용계수 a	(3) 항 적용계수 b	적용 건수(a×b)
철도분야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0건
철도분야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0건
철도분야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0	1.0	1.00건
기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0.6	0.6	0.36건
기타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0.6	0.36건
계			3.32건

- (5)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분 이상 준공된 경우 실적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 (6) 참여한 평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7)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 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바. 업무여유도

- (1)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가 “마”항의 발주처에서 발주하여 현재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대상으로 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또는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가)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Sigma \left( \text{계약금액} \times \frac{\text{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참여개월수}}{\text{총계약기간}} \times \frac{1}{10인} \right)$$

##### (나)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text{배점} - \left[ \text{배점} \times \frac{1\text{인당 중복금액 } 2.5\text{억원 초과금액}}{2.5\text{억원}} \right]$$

\* 1인당 수행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각 용역의 공고일 기준 참여일수가 1년(365일)을 초과할 경우 1년(365일)을 적용한다.

\*\*\* 계약금액(원)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금액을 의미한다.

-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 완료된 사업은 제외(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고 업무여유도 확인 결과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기술자 여유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3)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전수별 참여 과업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 중인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CD 또는 USB 1부).

\*\* 제출한 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PDF

또는 배포용문서로 저장된 흔글(HWP)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 교육훈련

-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나) 교육시간별 점수

- ①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frac{\text{교육이수인원}}{\text{평가대상인원}} \times 2점$$

- ②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frac{\text{교육이수인원}}{\text{평가대상인원}} \times 1점$$

#### 아. 과업의 이해도(前次)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1) 전차점수 = 배점  $\times \frac{\text{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text{총 평가인원수}(5명)}$

- (2)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차평가 인정범위>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차 없음
-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시 : ①환경영향평가, ②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해당 전차용역은 준공완료된 용역에 한하며,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 2.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

####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 실적

- (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유사평가 실적은 국토교통부, 행복지원,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및 금액을 평가한다.

- (2) 용역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가)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나) 해당평가 외 : 0.6

- (3)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b)

(가)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나) 기타사업 : 0.6

- (4) 실적산정 방법

(가) 실적전수(건) =  $\Sigma(a \times b) \times \text{지분율}$

$$(나) 실적금액(%) = \frac{\Sigma(\text{실적용역 전체준공금액} \times a \times b \times \text{지분율})}{\text{금회 용역의 전체분 발주금액}} \times 100$$

- (5)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전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6)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전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받은 비율 만큼 인정한다.

- (7)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의 경우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수 및 금액)하며,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신용도

-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처리한다.

- (가)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

\* 거짓·부실 작성, 복제에 의한 업무정지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거짓 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 (다) 부실 작성 : 2점/건 감점

- (2) 평가업체 또는 평가대상 참여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파장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평가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평가자의 누계별점에 따라 감점하며, 누계별점이 6점 이상인 경우 6점을 감점한다.

- (3) 용역사업자 및 참여평가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사업자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적용례>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임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0.5) + (0점×0.5) = 0.1 + 0 = 0.1점

- (4)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이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체(기업이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평가업체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d)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다. 기술개발

- (1) 환경분야의 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최대 2점).
- (2) 산출식 =  $\Sigma(\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 (3)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4)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 (5) 신기술, 특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a)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b)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이거나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한다.

(c)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d) 기술개발 실적은 최초 출원 시 2인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12 -

#### 라. 투자실적

-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방법

구 分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 수	2	1.8	1.6	1.4	1.2

(3) 특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평가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활용실적

- (1) 활용실적은 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최대 2점).

#### (2) 산출식 = $\Sigma(\text{환경분야 } 1.0 \times A \times B \times C)$

#### (3)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A)

활용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인정

#### (4) 등급별 계수(B)

구 分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 (5) 경과기간 별 가중치(C)

- 13 -

구 分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6) 용역업자가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7) 환경분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 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용역사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사. 업체능력평가(상대평가)

- (1) 총괄평가자로서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를 통해 평가한다.

(a)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

(b)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 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별도 책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업체능력평가)의 점수를 “0점” 처리한다.

(3)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지침 위반에 따른 감점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5부(회사명, 총괄 평가자명 등 일체 표기 불가) 총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총괄평가자 능력평가는 배점 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출평균한다.

#### 바. 공동도급

-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a)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b)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2)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1종 업체로 보며, 1종 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a)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와 1종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동도급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참여평가자의 10% 이상 참여(최소 1인 이상)한 경우만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점수를 인정한다.

(4) 중 ·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2종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2종업체의 환경 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14 -

- 15 -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아. 하도급준수(감점항목)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하도급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별첨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별점 누적 점수만큼 감점한다.
- \* <예시> 공고일이 '21.10.15.인 경우, 누적별점 산정 기간은 '18.10.16. ~ '21.10.15.
- (2) 참여업체는 최근 3년간 별점 누적점수를 <양식14>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참여업체가 제출한 누적별점 점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참여업체가 제출한 누적별점 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별점 누적점수 보다 낮을 경우 그 점수 차이만큼 추가로 감점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용역사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자. 청년고용

- (1)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신규고용율	가점(점)
1% 미만	-
1% 이상 2% 미만	0.1
2% 이상 3% 미만	0.2
3% 이상	0.3

$$(2) \text{신규고용율} = \frac{\text{최근3년간신규로등록된환경영향평가업기술인력의합(공고일전월기준)}}{\text{최근1년간의환경영향평가업기술인력의평균(공고일전월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 (3)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 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평가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4)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 (5)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한다(월말 기준).
- (6)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 16 -

- 17 -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6) 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 경력/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년 후부터 평가한다.

차. 평가사 고용가점(가점항목)

- (1)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

(나)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평가사 고용가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예) A사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지분 70%  
B사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지분 30%  
→  $(0.5 \times 70\%) + (0 \times 30\%) = 0.35$ 점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 자격 및 등급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4] 3 6 5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 경력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1. 참여자 능력	(3) 실적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평가 (68점)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4) 업무여유도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6) 과업의 이해도		[1]	절대평가
	(7) 이적계수			
	(1) 실적	가. 건수 나. 금액	[14] 7 7	절대평가 절대평가
	(2)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건설도	[9] 6 3	절대평가 절대평가
2. 환경영향평가업 능력평가 (32점)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6] 2 2 2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6) 하도급준수	하도급 위반 관련 벌점에 대한 감점		
	(7) 청년고용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금회 미적용
	(8) 평가사 고용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0.5	

- 18 -

- 19 -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1. 환경 평가	(1) 자격및등급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100] [14] (3) (6)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한다.		
	구 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해당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평가자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복잡	100% 90% 80%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2) 환경영향 평가등 경력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참여자 능력 평가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평가자	단순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3) 환경영향 평가등 실적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환경영향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 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능력 평가	총괄	단순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 평가자	단순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 평가자	단순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건수 = 총 참여기간(일) ÷ 365일 × 3건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		
	(4) 업무여유도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는)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Sigma [계약금액 \times (\text{공고일기준 } \text{향후 } 1\text{년이내의 } \text{잔여개월수} / \text{총계약기간} / 10)]$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종지증인 사업은 종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종지증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능력 평가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을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 20 -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환경 평가	(3) 환경영향 평가등 실적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환경영향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 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복잡	100% 90% 80% 70% 60% 50%
	분야 책임 평가자	단순 복잡	100% 90% 80% 70% 60% 50%
	분야 참여 평가자	단순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건수 = 총 참여기간(일) ÷ 365일 × 3건		
능력 평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		
	(4) 업무여유도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하는)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Sigma [계약금액 \times (\text{공고일기준 } \text{향후 } 1\text{년이내의 } \text{잔여개월수} / \text{총계약기간} / 10)]$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종지증인 사업은 종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종지증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을 미고려) 금액을 의미한다.		

- 21 -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1. 환경 평가	(5)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안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상권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	
	(6) 과업의 이해도(前)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 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 ※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8) 재정상태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 ※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9) 신용도	
	○ 일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여,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2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종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응시업체 및 참여평가자 「건설기술진종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2. 환경 평가	(1) 환경영향 평가등 수행실적 (가) 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건수 (나) 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금액	[14]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 외 : 1.0 - 환경영향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되며,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 실적건수 단순 복잡 배점 75%이상 250%이상 500%이상
	유사평가 단순 복잡 배점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유사평가 단순 복잡 배점	90% 80% 70% 60%
	유사평가 단순 복잡 배점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유사평가 단순 복잡 배점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능력 평가	(2)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 재정상태	[9] 6 3
	○ 일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여,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2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종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응시업체 및 참여평가자 「건설기술진종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이상 A3-이상 A3-미만 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미만 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을 세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태 건설도 겸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을 세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태 건설도 겸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22 -

- 23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2. 환경 평가 업체 능력 평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a) 개발실적	[6]	<p>(2) ○ 산출식 = <math>\Sigma</math>(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 &lt;등급별 가중치(A)&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신기술</th> <th>특 허</th> <th>실용신안</th> <th>연구보고서*</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p>*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p>&lt;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8</td> <td>-</td> </tr> </tbody> </table> <p>*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p>(4) 투자실적</p> <p>(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lt;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5% 이상</th> <th>1.5% 미만 1.2% 이상</th> <th>1.2% 미만 1.0% 이상</th> <th>1.0% 미만 0.75% 이상</th> <th>0.75% 미만 0.5%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body> </table> <p>* 산출식 = <math>\Sigma</math>(환경분야 1.0 × A × B × 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lt;활용건수 및 금액(A)&gt;</p> <table border="1"> <thead> <tr> <th>활용건수 (건)</th> <th>50이상</th> <th>50이상 40이상</th> <th>40이상 30이상</th> <th>30이상 20이상</th> <th>20이상 1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0이상</td> <td>200이상 180이상</td> <td>180이상 160이상</td> <td>160이상 140이상</td> <td>140이상 120이상</td> </tr> <tr> <td>기종 카드</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p>*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lt;등급별계수(B)&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신기술</th> <th>특 허</th> <th>실용신안</th> </tr> </thead> <tbody>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r> </tbody> </table> <p>&lt;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 / 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6</td> </tr> </tbody> </table> <p>*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p>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 수	1.0	0.8	-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활용건수 (건)	50이상	50이상 40이상	40이상 30이상	30이상 20이상	20이상 10이상	활용금액 (억원)	200이상	200이상 180이상	180이상 16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이상 120이상	기종 카드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 실용신안	1.0	0.8	0.6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 수	1.0	0.8	-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활용건수 (건)	50이상	50이상 40이상	40이상 30이상	30이상 20이상	20이상 10이상																																																																		
활용금액 (억원)	200이상	200이상 180이상	180이상 16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이상 120이상																																																																		
기종 카드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 실용신안	1.0	0.8	0.6																																																																				

- 24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2. 환경 평가 업체 능력 평가	(4) 공동도급	[1]	<p>○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증업체→제2증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증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p> <p>*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1종 업체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p> <p>-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와 1종 업체간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동도급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p> <p>* 참여평가자의 10% 이상 참여(최소 1인 이상)한 경우만 공동도급(공동 이행, 분담이행)의 점수를 인정한다.</p> <p>*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p>
	(5) 업체능력 평가	[2]	<p>○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p>
	(6) 하도급 준수		<p>○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별표3에 의한 '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p>
	(7) 청년고용		<p>○ 환경영향평가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p> <p>* 신규 고용률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일자별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일자별 공고일 기준)</p> <p>* 소수점 이하는 절삭</p> <p>* 신규 기술인력은 일자별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p> <p>*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p> <p>*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p> <p>*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응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응역참여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 25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방법
2. 환경 평가 업체 능력 평가	(6) 향사고점		<p>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따라 가점 부여 (0.5)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평가사 고용가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예) A사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지분 70% B사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지분 30% → <math>(0.5 \times 70\%) + (0 \times 30\%) = 0.35</math>점 ※ 본 가점은 2023.12.31.까지 적용</p>

####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6 -

- 27 -

구분	배점	지 표
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li> <li>■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li> </ul> </li> </ul>
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li> <li>■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li> </ul> </li> </ul>
미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li> <li>■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li> </ul> </li> </ul>
양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li> <li>■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li> </ul> </li> </ul>
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li> <li>■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li> </ul> </li> </ul>

- 28 -

- 29 -

&lt;양식 1&gt;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비 고
						종류	취득 일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 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평 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 ※ 작성요령

- 기술자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총괄평가자(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2인),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  
나. 참여평가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교육이수실적,

과업이해도, 이적계수(양식1 ~ 6)

다.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양식7)

라. 부설평가자 및 부설업체 등(양식8)

마. 재정상태 건설도(양식9)

바. 기술개발 및 투자·활용실적(양식10)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11)

아.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양식12) - 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6부 제출

[별책 6부 중 원본 1부(회사명 표기), 사본 5부(회사명 미표기)](흑백작성)  
자. 참여평가자 현황(양식13) - 공문에 첨부

차. 공동도급 현황(양식14)

카. 해외설계 수행실적(양식15)

타. 하도급거래 관련 별첨 부과 현황(양식16)

파.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7)

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현황(양식18)

가. 자기평가서(양식19) - 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2부 제출

## 2. 제출 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평가 및 서류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참여기술자평가 서류(68점)와 환경영향  
체 능력평가(34점) 서류를 나누어 제본 제출\*\*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1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3. 규격 : A4(210mm×296mm)

4. 질적 : 백상지(흰색, 80g/m<sup>2</sup>)

##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6. 제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lt;양식 2&gt;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전문분야 및 등급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평 가 구 분	사업 구분	적용 건수 =1.0 (도로)	용역기간 ='00.00.00 ~ '00.00.00 (00일 / 0월)	참여기간 ='00.00.00 ~ '00.00.00 (00일 / 0월)	참여 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회사	참여 분야		
1		1.0 (환경영향평가)	1.0 (도로)	1.0x1.0 =1.0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00.00 ~ '00.00.00 (00일 / 0월)				
2		0.6 (소규모)	0.6 (기타)	0.6x0.6 =0.36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00.00 ~ '00.00.00 (00일 / 0월)				
		계		1.36	00일 / 0월	00일 / 0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참여 평가자 이적계수

구 분	성 명	소속회사 입 사 일	이적 경과일	이적계 수	비 고
총괄평가자		22.22.33.			
분야별 책임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 36 -

- 37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행정처분

용역 사업자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내용			참여평가자				비 고
		제재 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제재명 및 사유	

- 가. 용역업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나. 참여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부실별점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재 무 결 산 기 준 일		
회 사 구 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동 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도	
등 급 평 가 일		
등 급 유 효 기 간		
신 용 평 가 기 관		

**\* 작성요령**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참여업체 및 참여평가자	누계평균별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최근 5년, 유사용역)

사업명 (사업개요)	용역 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처	참여 비율	평가구분	사업 종류	적용 건수	적용 금액	비고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			00%	1.0 (환경영향평 가)	1.0 (철도)	1.0×00% =0.0건	00.00×00% =0.00	
'00.00.00 ~ '00.00.00 (00일 / 0월)	00			00%	0.6 (소규모)	0.6 (기타)	0.36×00% =0.0건	0.36×00% =0.00	

**\* 작성요령**

-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하는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나. 용역실적은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증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을 대행한 경우는 실적 불인정

## 기술개발 및 투자·활용실적

기술개발실적

연번	등급(A)	건명	개발 연도	유효기간(B)	등록 권자	참여 지분율	적용 전수	비고
	신기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00건	

**\* 작성요령**

- 가.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환경분야 인정, 특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환경분야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 결정, 등록유지 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히 및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 라.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마.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것만 기재

투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A)	건설부문총매출액 (B)	지분율 (C)	투자실적 적용비율 (A / B × C)	비고

-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화
-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라.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활용실적(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를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가. 보호기간 : 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나.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은 설계에 적용된 공공설계명을 기재, 해당 특히, 실용신안은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다. 기성시점 : 해당 신기술의 설계준공 또는 공사기성 완료 시점을 기재, 특히 및 실용신안은 공사기성 완료 시점을 기재
- 라. 활용금액 : 해당 신기술은 설계준공 시 설계예산서 반영된 금액 또는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 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특히 및 실용신안은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 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40 -

- 41 -

- 마. 신기술 활용실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마. 특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lt;양식 11&gt;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변			
<b>1. 경영상태 검토내용</b>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b>2. 검토기준</b>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 42 -

- 43 -

심사번호	
------	--

원본
----

국토교통부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용역명 ]

20 . . .

업체명

심사번호	
------	--

국토교통부

사본
----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용역명 ]

20 . . .

### 1. 기술능력 평가서

####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정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1) 사업명 :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2) 사업명 :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 주요 제안사항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설계 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용역수행 시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포함)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 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 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참여평가자 현황****□ 용역명 :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락처		참여기술자			소속
			TEL	FAX	분야	성명	생년월일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별참여평가자	전문분야		
						전문분야		

**\* 우편물 수신 주소 및 담당자**

- 우편물 수신 주소  
00시 00구 00동 000번지(우편번호 00000)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 우편물 수신 담당자  
- 성명 : ○○○  
- 연락처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우편을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하지 말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요망함.

- 48 -

- 49 -

**□ 해외설계 수행실적(최근5년간)****○ 참여업체**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공동도급비율 (%)	비고
			· · · ( 개월)				

**○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비고
				· · · ( 개월)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금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벌주기관성격 장부( ), 공동기획( ), 민관(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청자 5-1) 회사명 (내 표)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설사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대표)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b>별지 제6호서식</b> 을 활용)		
III. 별첨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화인자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용 도		
용 역 명		
발 주 처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3) 영업소재지	1-2) 대표자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 기술사
2) ○○분야책임기술자	○○○		
3) ○○분야책임기술자	○○○		
4) ○○분야참여기술자	○○○		
5) ○○분야참여기술자	○○○		
IV. 불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화인자			
용도	P.Q., 입찰, 격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 52 -

- 53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내조필 확인각서****○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귀하****하도급거래 관련 별점 부과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번호	누산점수	비고

## ※ 작성요령

- 누산점수 산정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하도급 위반으로 부과받은 별점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과 관련된 별점**(경감·기증포함)의 합으로 한다.
- \* <예시> 공고일이 '16.11.21. 경우, 누적별점 산정기간은 '13.11.22.~'16.11.21.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참여업체의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하도급거래 준수에 대한 누적 별점부과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확인을 받아 그 증빙자료를 첨부
-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구분	업체명	점수	참여지분율	적용점수	비고
대표자	* 작성예시	0.5	70%	0.35	보유
공동사		0	30%	0	미보유
합계				0.35	

## ※ 작성요령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따라 가점(0.5점) 부여
- \*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환경영향평가사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첨부
-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행 [별지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보유증명서

##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총괄 ○○○, 분야책임 (분야1) ○○○, (분야2) ○○○
- 분야참여 (분야1) ○○○, (분야2) ○○○

□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자기평가	산 출 근 거
	<b>총 계</b>	[100]		
<b>1.</b> <b>참여 기술자 능력평가</b>	(1) 자격 및 등급	[14]		
	(a) 총괄평가자	3		
	(b) 분야별 책임기술자	6		
	(c) 분야별 참여기술자	5		
	(2) 경력	[17]		
	(a) 총괄평가자	4		
	(b) 분야별 책임기술자	7		
	(c) 분야별 참여기술자	6		
	(3) 실적	[17]		
	(a) 총괄평가자	4		
	(b) 분야별 책임기술자	7		
	(c) 분야별 참여기술자	6		
	(4) 업무역유도	[17]		
	(a) 총괄평가자	4		
	(b) 분야별 책임기술자	7		
	(c) 분야별 참여기술자	6		
	(5) 교육훈련	[2]		
	(6) 과업의 이해도(首次)	[1]		
<b>2.</b> <b>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b>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a)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b)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a) 부설평가자 및 부설업체 등	6		
	(b) 재정상태 건설도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a) 개발실적	2		
	(b) 투자실적	2		
	(c) 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1]		
	(5) 업체능력평가(총괄평가자 능력평가)	[2]	-	자기평가 미대상
	(6) 하도급준수	감점		
	(7) 청년고용	가점		금회 미적용
	(9) 평가사 고용	0.5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모듈을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한 점수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표지]

원본

[표지]

부본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철도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철도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평가자) 또는 (환경평가업체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평가자) 또는 (환경평가업체능력)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